

문서번호	보건위생과-109111
결재일자	2015.12.2.
공개여부	부분공개(6)
방침번호	

주 무 관	공중위생팀장	보건위생과장	동작구보건소 등장
김찬미	김종권	최선락	12/02 모현희
협 조			

##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결과 보고

기 간 : 2015. 7. 27. ~ 2015. 11. 25.

대 상 : 이·미용업 865개소

### 평가결과

구분	계	이용업	미용업 (일반)	미용업 (피부)	미용업 (손톱·발톱)	미용업 (종합)
계	865	93	641	86	11	34
녹색등급	320	14	277	16	6	7
황색등급	319	40	225	36	3	15
백색등급	226	39	139	34	2	12

결과 활용 : 업소에 위생관리등급표 송부 및 녹색등급 홍보

최우수업소 포상 : 로고 증정 및 구청장 표창

**동작구보건소  
보건위생과**

# 사전 검토사항

해당항목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토여부	비고
추진근거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법령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방침 <input type="checkbox"/> 별도규정 없음 (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,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)	
사업추진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존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일회성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(    년)	
예산확보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신규 확보 필요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확보 완료 ( 구 1,103천원 ) <input type="checkbox"/> 비예산 사업	예산팀조협 (    )
이해관계인유무	○ 주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  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  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타자원활용가능성	○ 중앙부처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  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서울시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    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○ 민간단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  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기업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  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
홍보필요성	○ 홍보대상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    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○ 보도자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홍보물심사조협 (    )

# 2015년도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 결과 보고

관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15년도 위생 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

## I 추진근거

-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,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, 제21조, 제22조
-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지침[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-2248]
-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[서울특별시 생활보건과-9355]
- 2015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[동작구보건소장방침 제(167)호]

## II 개요

- 기 간** : 2015. 7. 27. ~ 2015. 11. 25.
- 대 상** : 이·미용업 865개소 (※ 2015.05.29. 기준)
- 평 가 자** : 공무원 2명, 명예공중위생감시원 5명
- 방 법** :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표에 따라 질문, 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작성 후 결과에 따라 위생관리등급 산정

### 위생관리등급 기준

등 급	구 분	점 수	비 고
녹색등급	최우수업소	90점 이상	법적준수사항 미충족업소 제외
황색등급	우수업소	80점 이상 90점 미만	90점이상 법적 준수사항 미충족업소 포함
백색등급	일반관리대상업소	80점 미만	법적준수사항 충족, 미충족업소

### Ⅲ

## 평가결과

### 평가현황

(단위 : 개소, %)

구 분	계	이용업	미이용업 (일반)	미이용업 (피부)	미이용업 (손톱발톱)	미이용업 (종합)
관내 업소수(A)	865	103	631	86	11	34
평가 업소수(B)	865	93	641	86	11	34
평가 실시율(B/A)	100	90	102	100	100	100

※ 관내 업소수 : 2015. 11. 30. 기준

### 평가결과

#### 가. 총괄 결과

(단위: 개소, 점)

구 분	계	이용업	미이용업 (일반)	미이용업 (피부)	미이용업 (손톱발톱)	미이용업 (종합)
계(A+B+C)	865	93	641	86	11	34
90점이상(A)	325	15	279	18	6	7
80점이상 90점미만(B)	314	39	223	34	3	15
80점미만(C)	226	39	139	34	2	12
평균 득점	84.06	81.97	86.03	81.27	90.5	80.53

#### 나. 이용업 결과

(단위: 개소, 점)

관내 업소수	평가 업소수 (A+B+C)	평가 결과			준수사항 총족업소수	위생관리 등급		
		80미만 (A)	80점이상 90점미만(B)	90이상 (C)		녹색	황색	백색
103	93	39	39	15	56개소 / 60%	14	40	39

### 다. 미용업(일반) 결과

(단위: 개소, 점)

관내 업소수	평가 업소수 (A+B+C)	평가 결과			준수사항 충족업소수	위생관리 등급		
		80미만 (A)	80점이상 90점미만(B)	90이상 (C)		녹색	황색	백색
631	641	139	223	279	519개소 / 80%	277	225	139

### 라. 미용업(피부) 결과

(단위: 개소, 점)

관내 업소수	평가 업소수 (A+B+C)	평가 결과			준수사항 충족업소수	위생관리 등급		
		80미만 (A)	80점이상 90점미만(B)	90이상 (C)		녹색	황색	백색
86	86	34	34	18	56개소 / 65%	16	36	34

### 마. 미용업(손톱·발톱) 결과

(단위: 개소, 점)

관내 업소수	평가 업소수 (A+B+C)	평가 결과			준수사항 충족업소수	위생관리 등급		
		80미만 (A)	80점이상 90점미만(B)	90이상 (C)		녹색	황색	백색
11	11	2	3	6	9개소 / 81%	6	3	2

### 바. 미용업(종합) 결과

(단위: 개소, 점)

관내 업소수	평가 업소수 (A+B+C)	평가 결과			준수사항 충족업소수	위생관리 등급		
		80미만 (A)	80점이상 90점미만(B)	90이상 (C)		녹색	황색	백색
34	34	12	15	7	17개소 / 50%	7	15	12

## 총 평

-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대상 업소 865개소 중 320개소(36.99%)가 녹색등급 (90점 이상 및 준수사항 충족)을 받았으며, 총 639개소(73.87%)가 황색 등급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준수 및 업소위생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

- 공중위생관리법 준수사항 충족업소 비율은 미용업(일반), 이용업 순으로 높았으며, 미용업(일반) 및 이용업은 장기간 동업중에 종사한 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공중위생기준에 대한 인식이 우수하였음
- 2015년 신규 미용업종인 미용업(손톱·발톱)은 전반적으로 업소 위생수준이 높았으며, 영업신고증 및 면허증 게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, 신고증 등을 보관만하는 경우가 있어 현장지도 및 개선토록 함
- 전업종 공통으로 미준수율이 높은 사항은 '1-1 미용기구 소독장비 비치 및 작동여부'로, 미준수 사유로는 자외선 소독기 전선 연결부분의 끊김과 같은 기기적 결함 등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가 다수였고, 자외선 소독기 외에 다른 소독방법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공중위생관리법 상 명시되어 있는 소독방법(열탕, 크레졸 소독 등)으로 소독한 도구의 분리보관이 이뤄지고 있어 소독 및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도
-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중 취약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지적사항이 경미하여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였으며, 영업자 위생교육 시 업소 위생관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- 녹색등급 업소 중 특히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구청장 표창 및 로고를 수여하여,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고자 함
- 관내 이미용업소 관리 및 영업자 인식제고를 위하여 신규영업신고 업소 대상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2015. 12. 31.까지 실시하고자 함

**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(기 지급) : 840천원**

- 산출기초 : 40,000원 × 21회 = 840,000원
- 예산과목 : 식품·위생증진, 식품·위생관리,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, 일반보상금, 기타보상금

**☐ 최우수업소 증정용 로고 제작 : 263천원**

- 산출기초 : 43,840원 × 6개 = 263,000원 (※ 십원단위 절사)
- 예산과목 : 식품·위생증진, 식품·위생관리, 공중위생업소지도점검, 일반운영비, 사무관리비

- 붙임 : 1.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계산표 1부  
2.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등급표 1부. 끝.